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018 발의연월일: 2021. 8. 11.

발 의 자 : 홍정민 · 이용빈 · 김주영

민형배 • 박성준 • 한준호

신정훈 • 전용기 • 김정호

강훈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에 필요 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닝 산업에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상존 함에도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하여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이러닝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러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
	런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
	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
	<u>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u>
	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
	<u> 여야 한다.</u>